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Integrating the Contribution Collection Systems for the Four Social Insurance Programs: Current Status and Tasks Ahead

설정곤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총괄조정과장

사회보험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나 그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하며 통합효과가 큰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만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특히 노·사·정간 협상을 통해 징수통합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도에는 사회보험 징수통합 6개 법률 개정을 마무리함으로써 2011년 1월 통합징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0년도 한 해는 징수통합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금년 6월까지 구축하여 7월부터 연말까지 시험운영을 하게 되며, 조직·인력재설계를 통한 전환인력 선발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2011년 1월 1일부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이제 남은 기간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여 통합징수 시행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1. 추진 개요 및 경과

사회보험 통합 논의는 고용보험이 1995년 7월 1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문민정부 시기인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관리·운영체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단기적으로 소관부처별로 적용·부과·징수업무를 통합(2+2)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사회보험 완전통합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며, 이와 같이 본격적으로 통합논의가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시기를 살펴보면, 1964년 7월 1일 산재보험제도가 최초

로 도입된 이래 1977년 7월 1일 건강보험제도 도입,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제도 도입과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최근에는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각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제도간 상호연계 없이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2개 소관부처에 운영주체가 4개 기관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사회보험 전체적으로 업무 중복에 따른 보험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문제가 통합논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지난 정부에서는 2006년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방안을 확정하고, 통합방안으로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신설하고, 징수공단에

표 1. 사회보험 제도도입 현황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장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운영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거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장내용	의료보장/건강증진	소득보장	실업급여/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산업재해보상/재활
도입시기	'77.7.1.	'88.1.1.	'95.7.1.	'64.7.1.

서 2009년 1월부터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수행하려는 것으로 정부는 2006년 11월 적용·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통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련 7개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징수공단 신설에 대한 비효율과 비능률 발생 문제와 사회보험공단 노조측의 적극적인 반대 등에 직면하였으며, 제17대 국회 회기 종료로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한편, 2007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관련 법안을 박재완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17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현 정부들어에서도 사회보험 통합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8년 4월 22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결정하였고, 2008년 8월 11일 공기업 선진화 1차 계획에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발표되었다. 이에 현 18대 국회에서 사회보험 통합 관련 법률이 다수 발의되었으며, 이 중 2008년 11월 12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6개 개정 법률안을 중

심으로 법률 개정이 진행되었고, 2009년 12월 징수통합 관련 6개 법률 개정이 마무리 되었으며, 금년 한 해동안 징수통합 관련 제반 시행 준비를 하여 2011년 1월부터 통합징수가 시행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대표적 사례로 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3개 공단 이사장 및 노조 위원장이 참여한 사회보험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합의서’에 2009년 6월 4일 서명한 바 있다.

사회보험 징수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 단일기관이 사회보험료를 징수·배분하고 있으며, 보험료 징수주체는 보험료를 세금(tax)으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기여금(contribution)으로 인식하는가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인식과 세원의 투명성, 기관의 역사성 등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사회보험기관에서 관장하고, 미국·영국·스웨덴 등은 국세청에서 관장하고 있다.

“징수공단(신설)” 방안과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업무 위탁” 방안에 대해 비교해 보면,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 지사

신규 설치비 등 약 3,400억원의 초기투자비와 임원 인건비, 지사운영비 등 관리비가 매년 추가 발생되고, 인력 이동 규모가 약 6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초기투자비가 약 440억원에 불과하고, 인력 이동 규모도 약 1천명이며, 건강보험공단의 지사는 국민들의 생활권과 밀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고, 소득과 약 노하우 및 징수경험 활용 등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이 여러면에서 매우 합리적이며, 외국의 사례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기본 취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 한 장으로 통합고지하여 납부토록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사회보험 관리비용을 줄이되, 절감된 인력은 사회보험서비스를 확대·강화토록 하는 것이다.

2. 사회보험 징수통합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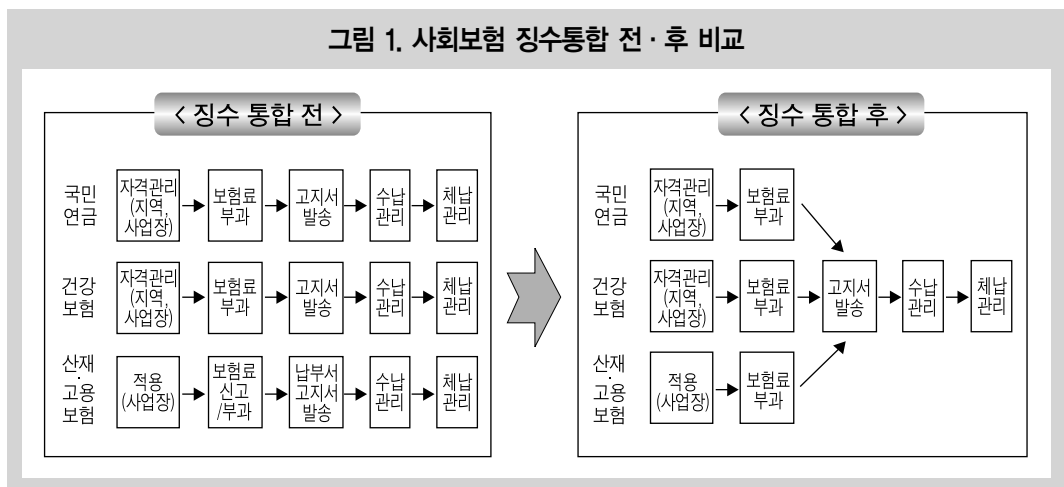
1) 사회보험 징수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 즉 사회보험료 고지부터 수납 및 체납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통합 일원화 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통합징수가 시행하게 된다. 다만, 징수통합을 제외한 자격관리(부과)와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2) 징수통합 후 사회보험서비스 확대·강화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업무를 일괄처리하게 되면 각 공단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던 인력 중 일부가 잔류하게 된다. 이 경우 징수 잔여인력은 각 공단에서 신

그림 1. 사회보험 징수통합 전·후 비교



규모 제공하거나 강화되어야 할 서비스에 투입
토록 할 계획이다.

3.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

1) 추진준비 및 일정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의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이 2009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시점을 시발로 하여 정부는 준비기간의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여 즉시 본격적인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준비의 주요 추진일정은 2010년 6월 까지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10년 7월부터 연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통합징수가 시행하게 된다.

2) 추진체계 구축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수개의 기관이 연관되어 있어 통합작업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정한 추진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였다. 이에 징수통합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두고 기획단 인력을 보건복지부 4인, 고용노동부 3인과 3개 공단 각 2인으로 구성하였고, 3개 공단은 각각 징수통합 실무추진단(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추진기획단과 공단 실무추진단과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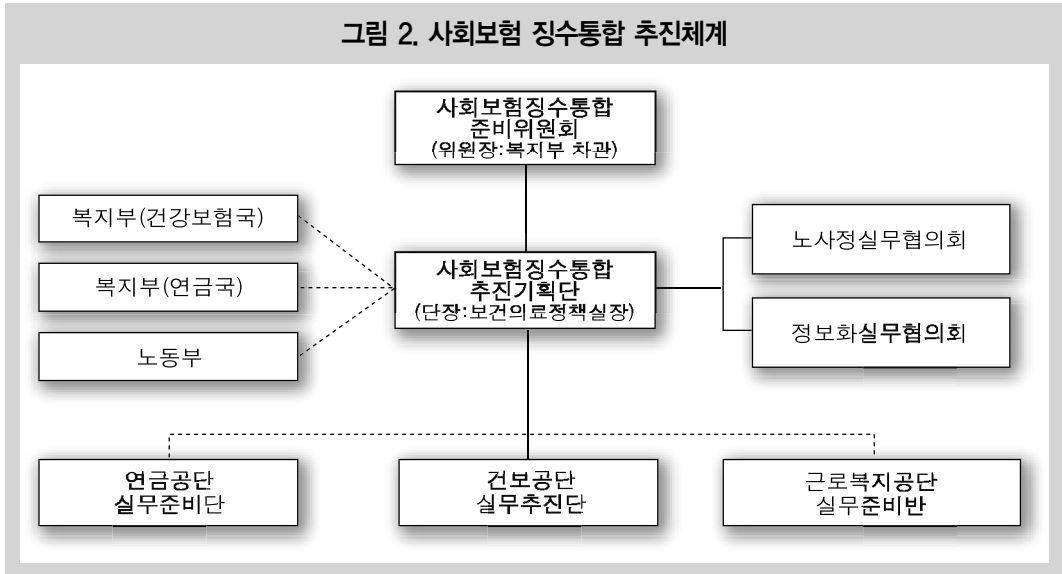
무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보건복지부는 핵심사항을 점검하고 공단 실무추진단은 세부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준비과정에서 징수통합 주요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 14인으로 하되, 정부위원 6인, 공단위원 3인,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하였고, 2010년 12월까지 운영한다. 또한 징수통합 과정에서의 의견조율 등 원활한 징수통합 업무추진을 위해 ‘노사정실무협의회’와 ‘정보화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3개 공단 및 노조 등 관계자가 참여하여 징수통합 과정에서의 이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조율하고 있다.

3) 징수통합 법령 개정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해서는 2개 부처, 2개 국회 상임위와 3개 공단이 연관되어 있는 6개 법률 개정이 필요하였다. 그간 역대 정부마다 사회보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사회보험공단 노조 반발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정부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에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2009년 12월 6개 법률 개정을 완료하였다. 6개 법률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과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

그림 2.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체계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이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09년 4월 30일 통과하였고, 이어서 5월 21일 공포되었다. 반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28일 노동부 관련 4개 법률 개정안을 위원회에 상정은 되었으나 입법 심의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2009년 1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의결, 2009년 12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09년 12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0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2010년 1월 27일 개정·공포하였다.

징수통합 법률은 현재 각각의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징수업무만을 통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사회보험 제도를 그대로 존치하되 다만, 4대 사회보험의 기준통일 등을

위해 일부 제도를 변경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징수이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를 국민건강보험사업과 징수위탁 근거 법에 따라 위탁받은 국민연금사업·고용보험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임금채권보장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각 사회보험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의 용도, 관리·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 각 사회보험에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가산금과 연체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던 것을 연체금으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에서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시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징수위탁보험료 등의 징수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은 관계 부처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징수위탁보험료 등의 징수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환될 자를 각 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공단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된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등 전환인력의 임용특례를 정하고 있다.

아울러 각기 다른 사회보험의 부과체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방법을 다른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현행 “자진신고납부(연납)”에서 “월별부과고지”로 변경하였고,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 보수(소득세 부과대상인 근로소득)로 변경하여 4대 사회보험의 부과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일원화 하였다. 다만, 2011년 1월분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월별부과고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를 확인하지 못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보험료는 2010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기준보수에 다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부칙(제6조)에서 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4)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구축은 사회보험 징수통합 준비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업무량과 초기투자비가 가장 많이 소요된다. 징수통합 시행에 앞서 6개월 이상의 시험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2010년 6월까지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징수통합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작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징수통합 정보시스템 및 정보연계시스템 신규 구축을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징수통합을 위한 자료연계가 가능토록 기존 정보시스템 변경 등 각 공단별 특성에 맞게 정보시스템 구축이 실시된다. 정보시스템 구축은 먼저 정보화전략 계획수립(ISP)를 마련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우선 먼저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주요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이 2009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추진하였다.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은 징수통합 업무를 위탁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보험별 상이한 징수(고지)→수납→체납)업무의

그림 3.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성도



절차·기준·서식 등을 통합징수가 용이하도록 재설계를 추진하였다. 사업자는 LG CNS 컨소시엄으로, 사업기간은 '09년 6월 11일부터 같은 해 9월 10일까지 3개월간 수행하였다.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진행은 기관간 이견 사항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조정하였고, 각 공단 이슈사항 등을 도출하여 협의·조정하였다. 협의·조정된 주요사례는 부과지 파일 전송기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국민연금공단은 21일을 각각 주장하였으나, 직장가입자는 19일 12시까지, 지역가입자는 20일 12시까지로 조정하였고, 부과지서 송달지를 각각의 공단에서 관리를 주장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토록 조정하였다.

아울러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화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위원장을 보건복지

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총괄조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였으며, 실무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부 사무관 3명, 고용노동부 사무관 3명, 3개 공단 정보화실장 등 5명으로 총 13명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가 구축비 확보방안이었다. 정보화실무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중점 논의 하였으며, 우선 각 공단에서 2010년도 기금예산을 편성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각 공단별 분담비율 결정을 추진하여 2009년 7월 20일 제2차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의 각 공단별 분담비율은 징수인력비율과 고지건수비율의 평균을 산정하여 산출된 비율인 국민건강보험공단 52%, 국민연금공단 29%, 근로복지공단 19%로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였다. 이와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 일부에 대해

국고지원을 하기 위해 2010년도 예산요구시 정보시스템 구축비 중 장비도입비의 50%를 요구 하였으나,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국가재정상황 곤란 등으로 국고 대신 정보시스템 구축비 전액을 각 공단 기금으로 편성토록 조정하였다.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이 2009년 9월 10일 완료됨에 따라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정보화실무협의회에서 사업자 선정방안을 논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이 되어 소요예산을 우선 일괄하여 조달하고, 분리발주(응용개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하여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를 2009년 12월 선정 결과, LG CNS가 주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응용개발, 시스템 감리는 2011년 3월 31일까지)이다.

2010년도에는 6월말까지 시험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11년 1월 1일부터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이 개통될 예정이다.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분석 및 설계를 '10년 2월 완료하였고, 7월 시험운영에 필요한 운용 프로그램 개발, 하드웨어 도입·설치와 소프트웨어 장착을 하였고, 현재 2단계 시험운영에 들어갔다.

5) 징수통합 조직·인력재설계

업무재설계가 2009년 9월 완료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받은 징수업무 수행을 위한 징수통합 조직·인력재설계 방안에 대

해서 노사정실무협의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대외협력과장, 위원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 3개 공단 노측 및 사측 대표 등 12명)에서 중점 논의하였다.

징수통합 조직·인력재설계 추진방안으로 인력 재배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징수업무량 및 소요인력 분석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이 주관하되 3개 공단이 참여하며, 연구용역 소요비용은 3개 공단이 분담토록 하고, 연구용역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키로 하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구용역과제인 “징수통합을 위한 조직·인력설계 방안 연구”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결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용역기간은 2009년 11월 27일부터 2010년 4월 26일(5개월)까지로 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55%, 국민연금공단 29%, 근로복지공단 16%를 분담토록 하였다.

아울러 2010년도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징수통합 조직 및 전환인력 규모 확정을 위해 제42차에 걸친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합징수업무 수행인력 규모, 이관인력 선발기준 및 근로조건 조정 등 핵심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를 거쳐 심의(안)을 마련하여 2010년 8월 17일 개최한 제4차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간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징수통합업무 수행인력은 총 2,541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1,512명과 국민연금공단 712명 및 근로복지공단 317명을

전환 배치하고, 선발기준에 따라 2회에 걸쳐 선발하되 지원자 부족시 해당 공단이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으며, 전환 직원은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의 보수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체계에 맞추어 개인별 호봉을 부여하고, 퇴직금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산' 또는 '승계'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임금 외 기타 근로조건은 3개 공단을 비교·형량하여 불이익 및 차별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인력재배치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전환인력을 선발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직무교육을 시킨 후 2011년 1월 1일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환 배치할 계획이며, 징수통합 후 잔여인력은 각 공단(소관 정책부서) 주관으로 신규 서비스업무를 발굴하여 재배치하게 된다.

4. 향후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

이제 사회보험 통합징수 시행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4개월 여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간 징수통합을 위해 준비해온 법령 개정,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징수통합을 위한 조직·인력설계 등 제반 준비가 관계 기관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앞으로 짧은 남은기간 동안 통합징수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하나 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2011년 1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험운영을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실시하

고 있다. 시험운영은 3단계 5차에 걸쳐 실제 통합징수가 시행되는 것과 똑같은 환경으로 통합징수업무 전반(고지→수납→체납)에 대해 실시하여 시험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하여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 이후에는 한치의 오류도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험운영 기간 동안 자료정비 및 전환시험을 7차례 실시하여 통합징수에 필요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신분을 보장토록 하고, 금년 9월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전환인력 선발을 거쳐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2011년 1월 1일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환 배치할 계획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환인력이 근무할 사무공간 및 집기류를 금년 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징수 초기에 징수율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납부유형·수납방식 제공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편의 및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통합징수를 위탁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과약 노하우와 징수경험을 충분히 살려 징수율 하락이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고,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에 따라 성과급 비중이 낮은 중소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성과급 비중이 높은 일부 대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115%이상 초과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초과보험료를 경감토록 할 계획이며,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불편 해소방

안을 마련하는 등 통합징수 시행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하게 되어 보험료 수납이 간편해지고, 둘째, 사업주 입장에서 보험사무가 간소화되어 사무처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셋째, 각 공단은 운영비 절감과 인력 활용을 통해 사회보험서비스를 확대·강화 할 수 있고, 넷째, 국가적으로도 3개 공단의 중복 업무를 통합함으로

써 징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2011년도는 사회보험 역사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간 일부분에 대한 통합은 있었으나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 일원화 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징수통합 과정에서 보험료 산정기준(임금→보수)과 부과납부방식(자진신고·연납→월단위 부과지) 일원화 등 일부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졌으나,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에 따라 각 사회보험의 자격·적용 등에 차이가 있는 제도를 발굴하여 점차 일치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